

우리나라 유어낚시 실태와 이에 적합한  
관리방안 연구

이상고, 박정석

---

부경대학교



# 우리나라 유어낚시 실태와 관리진흥방안 연구

이상고<sup>1)</sup>, 박정석<sup>2)</sup>

## A Study on the Realities of the Recreational Fishing and Management Scheme in Korea

Lee, Sang-Go and Park, Jeong-Seo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외국의 낚시관리의 유형 |
| II. 낚시의 사회경제적분석      | V. 한국형 자율낚시관리    |
| III. 현행 우리나라 낚시관리 실태 | VI. 결론           |

### I. 서 론

낚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중요한 야외 레저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요 증대의 잠재력이 높은 주요한 생태환경의 심미적 자원에 생물자원의 개발, 이용이란 복합적 레저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낚시 레저산업의 산업적 규모와 성격의 변화를 통하여 전통적 상업어업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국민레저산업의 발달로 낚시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증가가 심미적 생태환경이나 생물산업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자유참임상태의 과도한 자유낚시로 인해서 기존의 상업적 어업, 어촌의 생계유지형 전통어업과의 상충적 관계는 물론 특히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민물낚시의 경우 일부 낚시인의 과도한 쓰레기 방치, 떡밥, 어분 등의 오염물질 과다투여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및 제한 없는 물고기 포획으로 자원 및 생태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 연구내용으로는 낚시인구와 낚시터 그리고 낚시관련산업의 현황을 이전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하였고, 낚시의 사회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낚시관리제의 하나의 수단인 낚시면허제를 각 유형별 개방결합형, 자격분리형, 자율부분형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낚시관리실태를 내수면과 바다로 나누어

1)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2) 부경대학교 자원경제학과 조교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낚시관리제 모델개발과 함께 지속가능한 낚시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낚시의 사회경제적 분석

### 1. 낚시의 개념

레저·스포츠(일명 레포츠)<sup>3)</sup>로서의 낚시는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바다, 호수, 강 등에서 심신단련,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생활의 다양화와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서 행하는 바다낚시, 즉 낚시는 낚시선을 이용한 해변 배낚시는 물론 해안선, 방조제 연장, 방파제, 어촌계, 자연부락 등에서 행하여지는 던질낚시, 갯바위낚시, 방파제낚시, 보트낚시 등 다양한 유형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낚시인구가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체계화되어 가는 유료낚시의 개념이 새로운 낚시산업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해양산업의 다양한 범주에서 낚시 유어<sup>4)</sup>도 분명히 상업적 어업과 함께 해양생물자원을 개발·이용하는 레저산업의 일종이다. 따라서 낚시는 바다유어, 바다낚시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립되며, 바다낚시인 유어라는 의미에는 낚시를 포함하고 있어 낚시라 규정하고 유어와 바다낚시 및 유어선 등을 포함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낚시의 의미를 지닌다.

### 2. 낚시의 사회경제적 특성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직접면담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총유효 설문지 5168부<sup>5)</sup>를 통해 민물·바다낚시 각각에 대한 출조지 선호도, 평균 출조횟수, 출조일수 그리고 평균 밀밥류 투입량, 조력, 조획마리수 및 조획량, 출조비용 등 낚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낚시는 보통 레크리에이션 낚시(Recreational fishing), 스포츠 낚시(Sports fishing)으로 구별된다. 레크리에이션 낚시는 주로 연안에서 오락, 놀이나 기분전환을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연안 근거리로 국한하고 대상어종도 회유성이 낮고 체장도 작으며, 순한 연안 어종이다. 반면에 스포츠 낚시는 근해 원거리 어장을 이용하고, 참치와 같은 회유성이 강하고 힘이 좋은 어종, 특히 자원이 풍부한 어종을 대상으로 근육질의 운동을 낚시의 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의 어장이나 어종의 특성상 스포츠 낚시는 적합하지 않다.

4) 바다낚시인 유어(遊漁)라는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유희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일컫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법 제 2조(정의)에서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어선업법」, 「수산업법」에서 유어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의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과 건설교통부에서의 「하천법」에서는 그냥 낚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의 유어행위는 상업적 어업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pp93~94, 해양수산부, 2002)

5) 민물을 주로 가는 유효설문지 2720부와 바다낚시를 주로 가는 유효설문지 2448부를 이용했으며, 현지 설문조사방식은 낚시터 및 낚시터 인근에서 행해졌으며, 인터넷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민물낚시 대표 웹사이트와 바다낚시 대표 웹사이트 몇곳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임

구 분	출조지선호도 (%)	평균출조횟수	평균 출조일수	평균 밀밥류 투입량(kg)
강/하천	318/2720=11.69	28.40	33.16	0.66
댐/호수	301/2720=11.07	26.93	36.12	1.53
저수지	1899/2720=69.82	28.98	37.35	1.32
기타	202/2720=7.43	36.78	44.97	0.84

<표 1> 민물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

우선 민물낚시 출조지 선호도를 보면 저수지가 약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리고 민물낚시에 출조하는 낚시인의 출조지에 따른 평균 출조횟수 및 일수에서는 강/하천, 댐/호수, 저수지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각종 떡밥과 미끼 등의 밀밥류 투입량은 댐/호수와 저수지가 가장 높았다.

구 분	출조선호도 (%)	평균출조횟수	평균 출조일수	평균 밀밥류 투입량(kg)
갯바위	1649/2448=67.36	24.70	30.77	5.67
방파제	457/2448=18.67	19.86	22.58	2.74
선상	320/2448=13.07	12.74	15.71	2.21
기타	22/2448=0.90	12.23	13.45	1.55

<표 2> 바다낚시 출조지 선호 유형에 따른 이용형태

그리고 바다낚시 출조지 선호도를 보면 갯바위로 출조하는 낚시인이 약 67%로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평균 출조횟수와 일수에서도 갯바위 낚시빈도가 상당수 차지한다. 특히 갯바위에서의 평균 밀밥류 투입량은 5.67kg으로서 방파제, 선상낚시에 비해서 2배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갯바위 주변 오염의 강도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바다낚시	민물낚시
연평균 출조횟수 <sup>6)</sup>	26.9	17.5
연평균 출조일수	27.18	37.77
1회 출조시 평균 조획 마리수	4.33	9.91
1회 출조시 평균 조획량(kg)	2.20	2.77
1회 출조시 평균 출조비용(원)	112,000	58,500
1회 출조시 평균 밀밥류 사용량(kg)	4.54	1.25
평균 조력(낚시경험 연수)	9.34	15.43

<표 3> 바다/민물낚시의 일반적 출조 특성의 비교

6) 여기서의 연평균 출조횟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5168부에서의 연평균 출조횟수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 4559명에 의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낚시터 및 낚시터인근에서의 직접면담조사와 낚시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결과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출조횟수를 하는 대상자를 선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연평균 출조횟수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바다와 민물낚시의 경우 연 평균 출조횟수는 각각 26.9회, 17.5회로서 바다가 현저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1회 출조시 평균 조획마리수와 조획량은 바다낚시의 경우 4.33마리와 2.20kg이고 민물낚시의 경우는 9.91마리와 2.77kg이다. 그리고 1회 출조시 평균 출조비용(교통비, 배삭, 각종 미끼 구입비 등)은 바다낚시가 약 11만2천원이고 민물낚시는 약 5만8천원이다. 바다낚시가 민물낚시에 비해 출조비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는 바다낚시의 경우 주로 배를 이동수단으로 하여 갯바위 낚시를 즐기기 때문이다.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에서 투입되는 평균 밀밥류 사용량은 바다낚시가 4.54kg으로 조획량 2.20kg보다 많았고, 민물낚시에서는 평균 밀밥류 사용량이 1.25kg으로 조획량인 2.77kg보다 적었다. 바다낚시의 주요 밀밥류는 크릴새우와 집어채 등이 주를 이루고, 민물낚시의 경우는 떡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바다낚시 이용객 중 유어선 이용빈도의 경우는 약 58.7%가 이용하고 있고, 민물 유료낚시터의 연간 평균 이용횟수는 평균 약 9회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물낚시인구(약 411만명)의 연간 유료낚시터 이용횟수 9회를 적용하면, 유료낚시터의 직접적인 산업규모로는 약 1,110억원이 산출된다. 설문대상자의 낚시장비의 수입품 비중으로는 평균 10%이하로 차지하고 있었다.

	1회 출조시 만족감의 화폐가치 평균	1인당 연평균 출조횟수	낚시인구	연 화폐가치 총액
바다낚시	365,000원	26.9	3,502,000	약 34조
민물낚시	379,000원	17.5	4,111,000	약 27조

<표 4> 바다·민물낚시 출조자체에 대한 만족감의 화폐가치

자체설문조사의 바다·민물낚시 출조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표 3-12>에 보는 바와 같이 1회 출조시 만족감의 화폐가치 평균과 1인당 연평균 출조횟수, 그리고 각 낚시인구를 곱하여 바다·민물낚시 자체에 대한 연 화폐가치 총액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바다·민물낚시의 연 화폐가치 총액에서 각각의 평균출조비용을 차감하면 바다낚시와 민물낚시의 1회 출조시 소비자잉여를 구할 수 있는데 바다낚시의 소비자잉여는 25만3천원이고 민물낚시의 소비자잉여는 32만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잉여란 자원·환경경제학적 측면에서 1회 출조하였을 때, 바다낚시터와 민물낚시터의 자연경관이나 환경자체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포함되어 산출된 것으로서 정신적인 만족감과 스트레스 해소, 가족 또는 동료애를 느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Ⅲ. 현행 우리나라 낚시관리실태

#### 1. 우리나라 낚시 관리제의 기본구조

내수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육지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을 말한다. 즉 하천, 댐, 호소, 저수지 및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과 사유

토지에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항). 내수면은 해수면과는 달리 직접 소유·점유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면관리자가 있는 유료낙시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크기로 분류하는 형태와 허가방법에 따른 분류의 형태, 수면의 형태에 따른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낙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정부지자체,농업기반공사-관리, 개인, 수리계, 내수면양식계가 허가/신고 낙시터</li> <li>- 내수면어업법, 지자체신청서-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위치지적도 등 구비서류 다수</li> <li>- 목적외 사업신청-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세무서 사업등록-낙시업허가-허가낙시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은 해수면과 달리 수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류지(2만평 이상), 농업용 저수지, 국유지, 농업기반공사, 시, 군 관리</li> <li>- 중류지(2만평 이하, 5000평정도) 시, 국유지, 일부 저수지 농업기반공사</li> <li>- 소류지(5000평 이하), 사유지-양어장형 낙시터, 수도권 인근 대부분 낙시터</li> </ul> </li> <li>• 낙시업의 허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어업법 허가낙시터, 사유지신고낙시터(수입어식어종신고), 사유지무신고낙시터</li> <li>- 불법낙시터(양식장 허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매(임대)낙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반공사 저수지-공개경쟁입찰-사전임대차 계약-수면관리권 - 유료낙시터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지 신고 및 허가낙시터 운영과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지 - 농지전용-낙시업 허가(본인 의사에 따른 허가) - 허가없어도 가능 - 수입찰어업식 -허가 필요</li> <li>- 농지전용 - 산업과/농산과 - 신청서 다수 구비서류 - 낙시업 신고</li> <li>- 사유지무신고낙시터 - 양식업으로 신고한 후 낙시업을 운영하는 경우</li> </ul> </li> </ul>

<표 5> 내수면 낙시관리의 기본구조

우선 규모로 분류하는 형태에는 대류지, 중류지, 소류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류지의 경우는 2만평 이상으로 자연지의 성격을 띠면서 주로 농업용저수지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대류지의 경우는 거의 국유지로서 농업기반공사나 시, 군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중류지의 경우는 수면적이 2만평이하 5000평 정도의 규모로서 대부분 시, 군유지이거나 일부 기반공사의 관리저수지의 경우로 농업용저수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류지형태에서 사유지형의 경우는 양어장형 낙시터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주로 5000평 이하의 한 눈에 보이는 낙시터로 수도권 인근지역의 대부분의 낙시터에 해당한다.

그리고 허가방법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볼 때, 낙시업을 허가업으로서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유지의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허가낙시터, 사유지신고낙시터, 사유지무신고낙시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유지 낙시터는 미신고상태로 낙시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어종인 이식승인 어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하므로 최근에는 신고할 수 없는 불법낙시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고를 필하고 있다. 불법낙시터는 양식장으로 신고하고 낙시업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각종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 1) 허가낙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

현행 우리나라 내수면에서의 유료낙시터의 운영(7)은 기본적으로 낙시터(강, 호수, 저수지

등)가 될 수 있는 곳이 국,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르고, 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 공유지의 저수지는 대부분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공공용수면인 경우에 수면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개인, 내수면 양식계, 수리계가 유료낙시터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3, 4, 5, 9, 11,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11조, 시행규칙을 근거로 낙시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여 할 수 있다. 즉 국, 공유지의 경우의 낙시업 허가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해주민동의서, 위치도, 지적도, 토지대장,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측량도, 시설물배치도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목적의사용승인<sup>8)</sup> 신청을 한 후 내수면어업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치면 최종으로 낙시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업용수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경쟁입찰원칙에 따라 사전임대차계약<sup>9)</sup>을 통해 수면관리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2) 사유지 신고 및 허가낙시터의 운영과 관리체계

공공수면과 연결하지 않은 개인수면의 사유지 낙시터는 낙시업을 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sup>10)</sup>을 득하고(전용부담금납부) 낙시업 허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허가를 득할 수 있고, 아니하여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활어를 낙시터에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낙시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의 신청은 산업과나 농산과 등에서 신청서, 지적도, 토지대장, 배치도, 설계도, 현황측량도, 구적도, 현황사진, 대체농지조성금, 지역공채의 납부 및 구입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낙시업신고를 하게 된다.

## 3) 사유지 무신고낙시터

사유지 무신고낙시터라 함은 소위 양식을 목적으로 양식업으로 신고한 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낙시업을 하는 경우로서 낙시업 행위가 불법이다. 이러한 무신고낙시터는 사용목적은 양식업으로 하여 대체농지조성비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발당하면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낙시업을 못하게 된다. 이러한 양어장낙시터는 개발제한구역지정예관법률 위반과 농지형질변경 면적에 20% 해당하는 침전저(정화시설)를 설치해야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30조의2항 위반과 양어장은 20cm 미만의 고기(수입, 국내산포함)만을 양어용으로 입식하여야 하지만, 이식승인규칙을 위반하여 정밀검역되지 않은 식품으로 수입되는 20cm이상의 중국산붕어, 잉어, 향어를 무차별방류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 및 생태환경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료낙시터로 허가나지 않은

7) 상수원특별대책권역, 절대농지, 절대녹지(그린벨트)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은 신규허가불가지역으로 되어 있다.

8)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저수지, 유지, 구거,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및 그 부지를 시설의 설치목적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기반공사와의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매년 갱신계약 체결시 변동된 징수율에 의해 재조정된다. 또한 사용기간은 목적의사용 승인기간으로 하며, 임대료 이외에 부가세가 별도 관련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곳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유료낙시터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영업하는 곳이 전국낙시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00여곳으로 불법유료낙시터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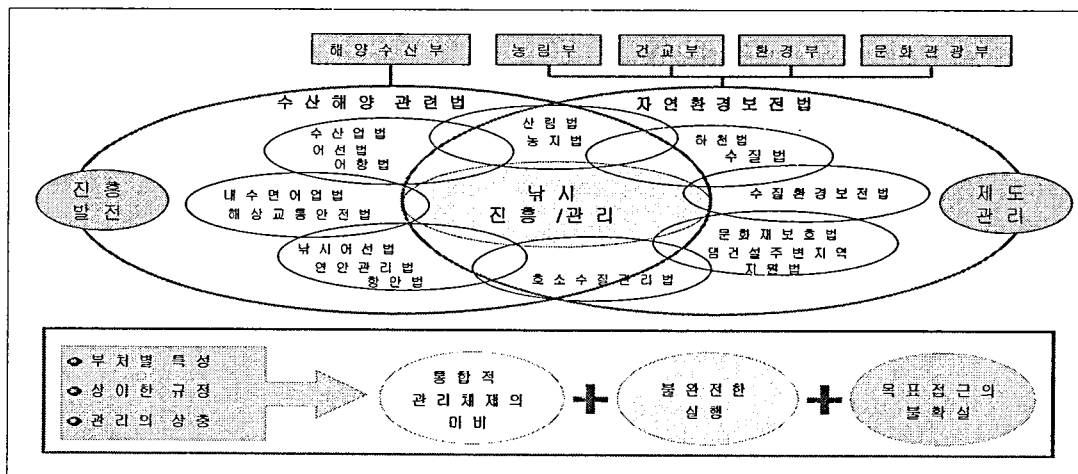
- 유료 낙시터(및 체험어장)지정(수산업법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 어촌계(마을어장), 지구별조합(협동양식업)의 면허어업-유료 낙시터, 체험어장 지정
  - 유료낙시터 체험어장의 지정관리예관한규칙, 관리 및 이용료, 이용종교부
  - 관리자 규정, 이용자 제한/금지, 불법유어장 과태료, 수자보호령의 포획/채취제한 등
- 낙시어선업의 낙시
  - 낙시어선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의 낙시선 이용 및 안전-낙시어선업자에 대한 규정
  - 개별 낙시어선업자의 유료낙시

<표 6>해면 낙시관리의 기본구조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해면 낙시관리제의 기본체계는 유료낙시터 및 체험어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35개소로서 어촌계(마을어장), 지구별 조합(협동양식업)의 면허어업으로 되어 있고, 낙시어선업의 낙시로서는 낙시어선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의 낙시선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기존의 소규모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개별 낙시어선업자로서 배식을 받으며 실질적인 유료 선상낙시업에 종사하고 있다.

## 2. 낙시관리의 기존법령의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유어낙시에 대한 관리는 한 부서에 획일화되지 못하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낙시관리에 대해 부분적 관리가 되고 있어 낙시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자면, 수산해양관련법하에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유어선법 등이 있고, 자연환경보전법하에는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낙시관리의 상이한 관리주체

이와 같이 부처간의 특성과 상이한 규정 그리고 관리의 상충으로 낚시자원관리의 통합적 관리체제의 미비와 불완전한 실행과 정책난맥, 그리고 자원 및 환경보전의 목표접근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낚시진흥 및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해당 부처	법령	유어 관리 목적	유어 관리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 낚시터 지정 등	- 낚시터 관리자 규정, 이용자 제한, 금지 -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낚시터 제한
	내수면 어업법	- 낚시질서 확립 - 낚시행위 제한	- 낚시행위 제한 어구/지역/시기/대상 - 불법 낚시행위자에 대한 벌칙
	낚시어선법	- 낚시어선의 안전	- 낚시어선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 낚시행위 등의 제한	- 수질보호 위한 낚시행위 및 지역제한 - 낚시방법, 낚시도구, 떡밥, 오염행위의 제한
	호소수질관리법	- 낚시행위 등의 제한	- 낚시행위 금지/제한구역 설정 -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오염제거 수수료 징수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 보전	-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낚시행위 제한 -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건교부	하천법	- 낚시행위금지	- 야영, 취사, 떡밥, 어분 등의 낚시행위 제한
	수도법	- 상수원 보호	- 낚시행위 금지규정(과태료 규정 없음)
문화관광부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호	- 보호구역안에서 포획채취행위 제한 -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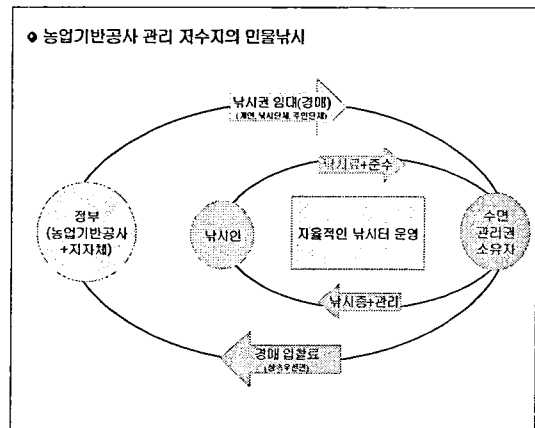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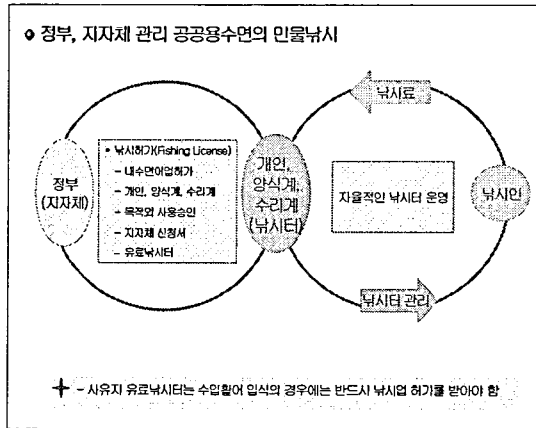
<표 7> 낚시관리 감시관련 기존 법령과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재 낚시와 관련한 기존법령과 주요내용은 <표 7>과 같다. 크게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낚시어선법으로 각각 낚시터 지정, 낚시질서확립과 낚시행위의 제한, 그리고 낚시어선의 안전에 대한 관리목적의 지니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낚시행위의 제한,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법과 수도법의 제정으로 낚시행위의 금지 및 상수원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포획금지어종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상이하거나 중복으로 인하여 혼돈의 소지를 줄 뿐만 아니라 감시 및 감독 그리고 처벌체계가 미약하여 형태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일원화와 통일성을 갖추고, 감시요원의 확충과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 3. 민물/바다낚시관리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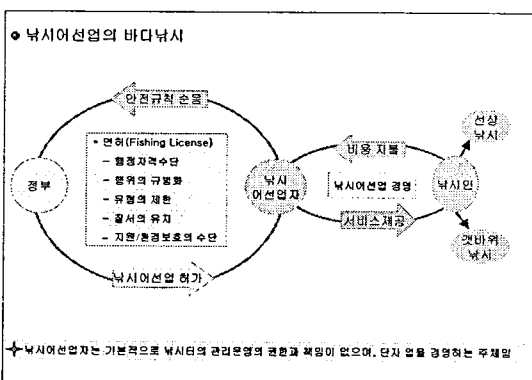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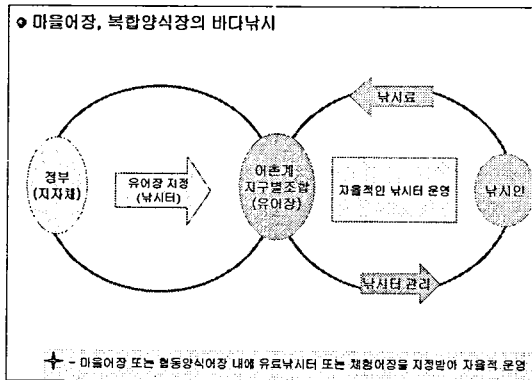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낚시 운영체제는 크게 정부, 지방자치단체하에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수면의 민물낚시와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 관리의 공공용수면의 경우는 [그림 2]와 같이 개인, 양식계, 수리계등으로 내수면어업허가, 목적외사용승인을 내어주고 이를 관리주체가 유료낚시터로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난 후 일반낚시인으로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 낚시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2] 공공용수면의 민물낚시 체계 [그림 3]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의 민물낚시 체계

그리고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목적외 사용승인을 수면관리권 소유자에게 공개입찰원칙의 경매를 통해서 낚시터 운영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때 수면관리권 소유자는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 자율적인 낚시터를 운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바다낚시 운영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어촌계, 지구별조합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낚시어선업에 의한 선상낚시나 갯바위낚시에 해당된다.



[그림 4] 마을어장, 복합양식장의 바다낚시

[그림 5] 낚시어선업의 바다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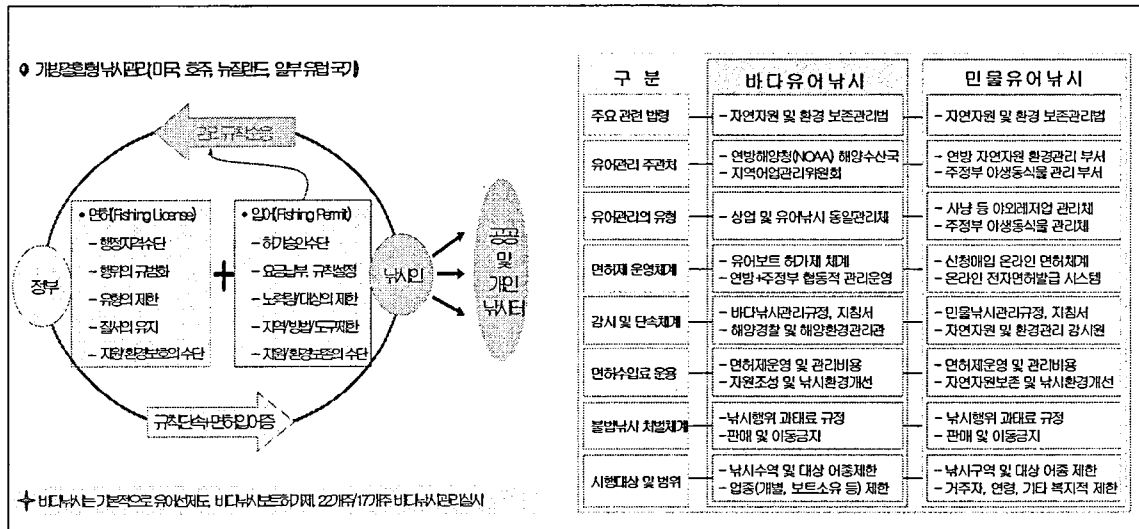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촌계, 지구별 조합에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곳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을 지정하게 되고, 이를 관리주체는 일반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낚시료를 받고서 낚시터를 관리하게 된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낚시어선업의 바다낚시의 경우는 정부의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업 허가를 내어주어 규정된 안전규칙을 순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업자는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배삭을 지불하고 갯바위낚시 또는 선상낚시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바다낚시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낚시어선업자는 기본적으로 낚시터 관리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책임이 필요하다.

## IV. 외국의 낚시관리의 유형

### 1. 개방결합형 낚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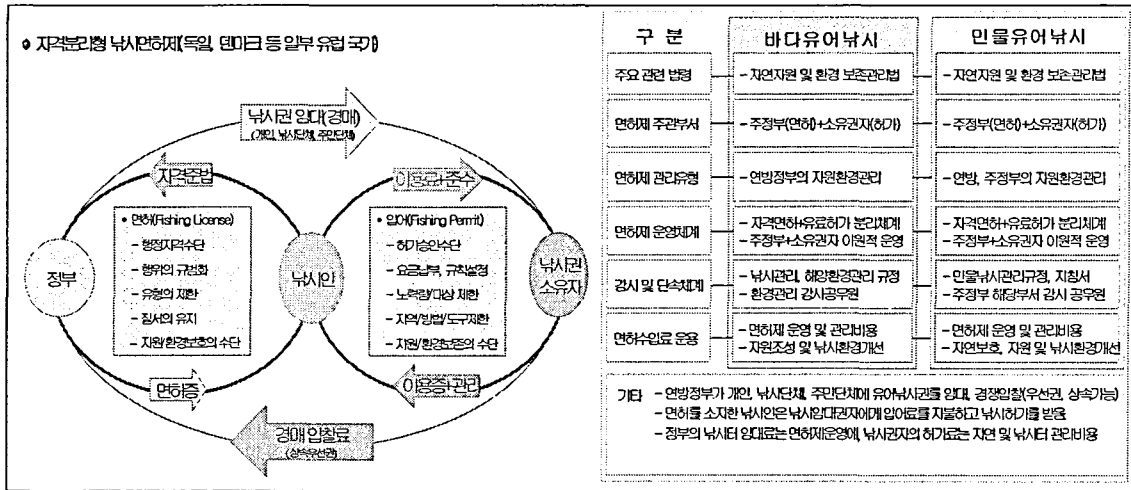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결합형 낚시관리방식은 기본적으로 면허(Fishing License)와 승인(Fishing Permit)을 하나로 묶어 면허증을 낚시인에게 바로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면허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자격수단과 행위의 규범화, 낚시유형의 제한과 승인에는 허가승인수단으로 요금납부, 규칙설정, 노력량 및 대상어의 제한, 지역, 방법, 조구의 제한을 통하여 자원 및 환경보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낚시인은 낚시요금의 지불과 동시에 유어규칙을 순응하게 되고, 정부는 Ranger 제도나 Watch Dog 제도를 통하여 규칙을 단속하고 감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 바다낚시는 기본적으로 유어선 제도를 통하여 바다낚시보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6] 개방결합형 낚시관리의 관리주체

### 2. 자격분리형 낚시관리

두번째 유형으로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분리형 낚시관리 시스템이다. 이는 독일,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유럽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정부가 낚시인에게 면허증을 직접 발급해 주고, 낚시인은 정부에게 자격을 받게 된다. 이때, 면허라는 것은 낚시인이 낚시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는 독일에서처럼 유시험과 무시험 제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면허증을 취득한 낚시인은 낚시권 소유자에게 낚시행위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야 비로소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낚시권 소유자는 낚시인에게 유어증(ticket)을 주게 되고, 낚시인은 해당 낚시터에서의 유어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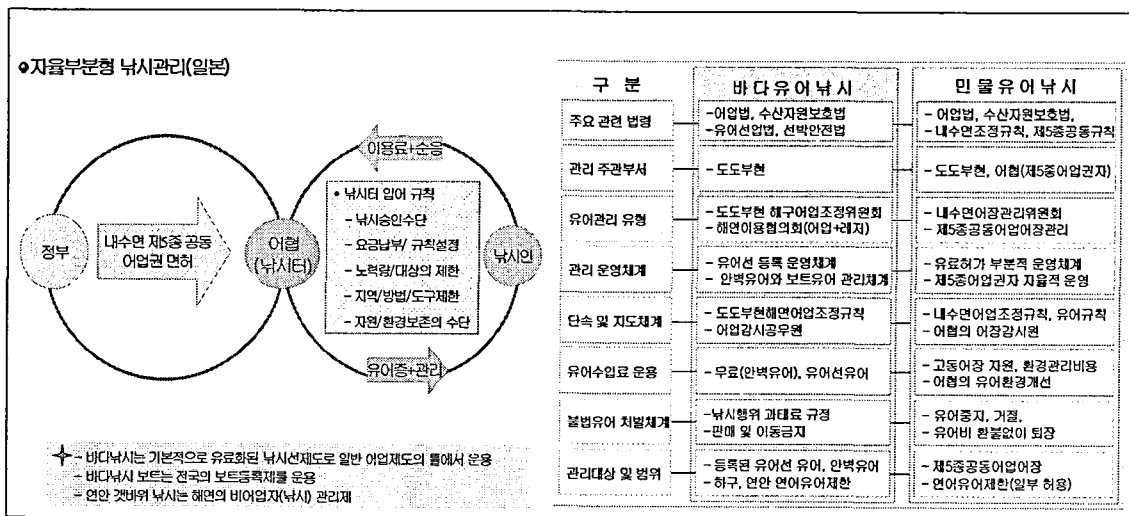


[그림 7] 자격분리형 낚시관리와 관리주체

그리고 낚시권 소유자의 결정은 정부가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인, 낚시단체 또는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낚시권을 경매를 통해 임대하게 된다. 한편 경매를 통해 임대한 낚시권에 대해서는 낚시권 소유자가 정부에게 경매입찰료를 지불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 3. 자율관리형 낚시관리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자율부분형 낚시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내수면 제 5종 공동어업권 면허를 어협에 맡기게 되고 어협에서는 낚시인들로 하여금 유어증을 발급하게 되며, 이때 낚시인은 어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낚시터에서 유어낚시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 순응하게 되며, 유어티켓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낚시인은 어협에서 정한 요금의 납부와 동시에 규칙에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유어낚시의 규정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량, 대상어 제한, 지역, 낚시방법 및 조구제한을 통하여 자원 및 환경의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8] 자율부분형 낚시관리(일본)와 관리주체

한편 일본에서의 바다낚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료화된 유어선제도로 일반 어업제도의 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바다낚시보트는 전국의 보트등록제의 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연안 갯바위 바다낚시는 해면의 비어업자에 해당하는 유어인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부분형 낚시관리의 장점은 유어규칙의 준수에 따른 감시, 감독은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수면 제 5종 공동어업권 면허를 받은 어협에서 자율적으로 감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기에 많은 감시요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4. 낚시관리 유형의 비교분석

유어낚시 관리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구분하면 <표 8>과 같다.

유형	시스템의 일반적 특성	시스템의 장단점
자율부분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과 유어의 일체형 관리 시스템</li> <li>- 어업 및 낚시관리 주체의 단일화 시스템</li> <li>- 자원 및 환경친화적 생물자원 관리 시스템</li> <li>- 자원 및 환경수용력 중심 관리 시스템</li> <li>- 낚시터 관리 중심의 유료화 시스템</li> <li>- 어업단체의 자율적 지역적 관리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관리의 자율시스템</li> <li>- 어업중시적 유어산업화</li> </ul>
개방결합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완전한 통제 및 책임 시스템</li> <li>- 자원과 환경관리의 일체화 시스템</li> <li>- 수익자 부담에 기초한 시장접근성 시스템</li> <li>- 낚시수요공급의 효율화 중심 접근성 시스템</li> <li>- 규율화된 수요와 공급의 조화</li> <li>- 시장체계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시장의 개방시스템</li> <li>- 감시 및 수급의 고비용화</li> </ul>
자격분리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자격관리와 낚시터 관리의 이분화</li> <li>- 인간중심의 자원관리의 용이성</li> <li>- 행위자적 위주의 노력량 관리 시스템</li> <li>- 낚시인의 노력량 중심 관리 시스템</li> <li>- 정부의 규범적 규율화 시스템</li> <li>- 시장원리에 의한 지역중시적 관리 시스템</li> <li>- 민간과 정부의 기능배분의 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보존의 균형시스템</li> <li>- 지역중시 및 공공재 제한</li> </ul>

<표 8> 유어낚시 관리 유형의 비교분석

우선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부분형 관리제도는 어업과 유어의 일체형 관리시스템으로서 관리주체 또한 단일화하고 있다. 자원 및 환경친화적 생물자원에 중심을 두어 민물낚시터에 있어서는 어협의 자율화하에 낚시터 관리중심의 유료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원관리의 자율적인 체제로서 바다낚시에 대해서는 어업중시적 유어산업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구미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결합형 낚시관리는 자원과 환경관리의 일체화하에 정부의 완전한 통제 및 책임시스템으로서 낚시인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초한 시장접근적 형태이다. 따라서 이는 시장체계의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결합형 체제는 낚시관리자나 낚시인의 자율적인 관리가 아니므로 낚시규정에 대한 감시 및 수급의 고비용화가 초래된다는 점이 단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유럽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분리형 낚시관리는 정부의 자격관리와 낚시터 관리의 이분화를 통해서 정부는 낚시인에게 시험제도를 통한 면허를 발급해 주게 되고, 낚시권을 가진 자는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지역중시적 관리시스템을 통해 낚시를 허용하는 체제이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기능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한 것으로 자율부분형 관리와 개방결합형 관리를 결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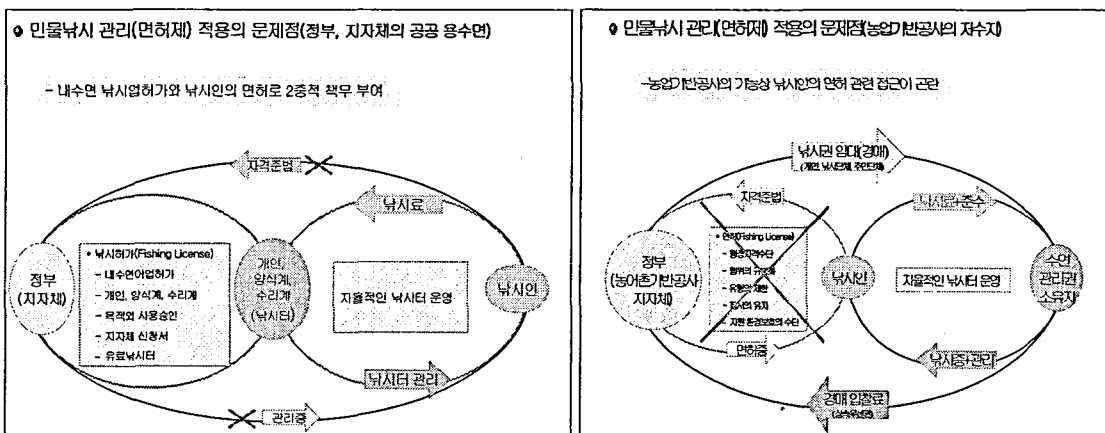
## V. 업계 및 단체 중심의 한국형 자율낙시관리

낙시관리제의 목적은 자원, 환경의 지속성, 낙시관리의 효율성, 지역사회 안전성, 낙시 관련산업경제의 발전성이라는 4가지 항목의 균형있는 지속성을 목표로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유어낙시의 관리라 함은 어족자원 및 생태환경의 지속적 생산성과 낙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낙시활동의 규제나 조정, 필요에 의한 제재, 자원의 배분과 공공화의 시행, 의사결정, 계획, 자문, 분석, 정보수집 등에 대한 통합적 이행과정의 제도적 총칭에 해당 하는 것이다.

### 1. 낙시 관리의 실용/효용성 분석

#### 1) 민물낙시 관리(면허제)의 실용/효용성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낙시 운영체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수면에 대해서는 개인, 양식계, 수리계 등으로 유료낙시터로서 운영권을 허가방식으로 관리권한을 주고 있다. 이를 다시 일반낙시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유료낙시료를 받고서 유료낙시운영자는 낙시터를 관리 하게 되는 체계이다. 이때 외국의 낙시관리 시스템과 동일하게 정부는 직접 일반낙시인에게 낙시면허증을 발급하고 낙시인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격준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유료낙시업의 허가과 낙시인의 면허로서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양식계, 수리계등으로 유료낙시권을 양도 하였기에 유료낙시터 운영자는 일반낙시인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낙시터 운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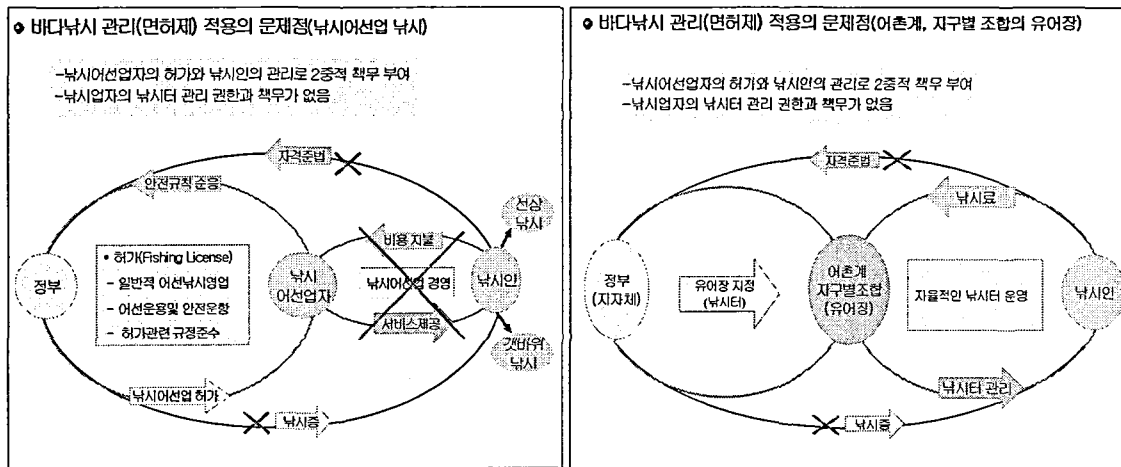
<그림 9> 민물낙시 관리(면허제) 적용시 문제점

한편 민물낙시터에서 농업기반공사 소속 저수지의 경우는 외국의 낙시와 같이 낙시인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면허증 발급과 자격준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낙시단체, 주민단체에게 수면관리권을 경매제도를 통해 낙시권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경매를 통한 낙시권임대를 받은 자는 농업기반공사에게 경매입찰료를 지불하게 되고 일반낙시인들로부터 낙시료를 받게 되고 자율적인 낙시터 운영을 하게 된다. 이를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시면허증제도를 농업

기반공사가 일반낚시인들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농업기반공사의 기능상 낚시인의 낚시면허권과 관련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2) 바다낚시 관리(면허제) 도입의 실용/효용성 분석

현재 우리나라 바다낚시의 경우는 우선 정부가 낚시어선업자에게 어선낚시영업을 허가를 내어주어 안전규칙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낚시인은 낚시어선업자를 통해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선상낚시나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일반낚시인에게 낚시증을 부여하고 자격준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낚시어선업자의 허가과 낚시인의 면허로서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낚시업자는 낚시터 관리권한 및 책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면허증 제도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림 10> 바다낚시 관리(면허제) 적용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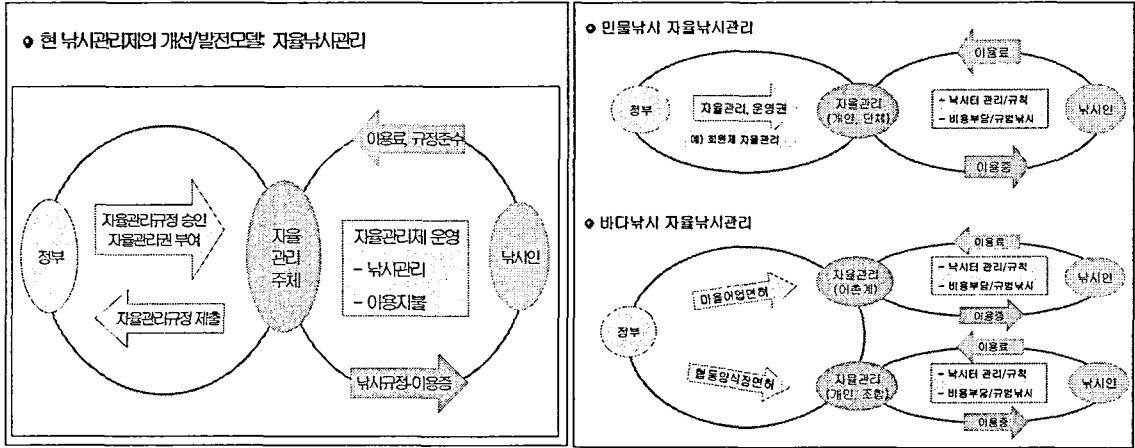
한편 어촌계와 지구별 조합의 유어장의 경우는 우선 정부가 어촌계, 지구별조합에게 낚시터로서의 유어장 지정을 하게 되고, 일반낚시인은 일정한 낚시요금을 지불하게 되고 유어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다. 이때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자율적인 낚시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당장의 낚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면허증을 발급하고 자격준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도 유어장의 지정과 낚시인의 면허상의 이중적 책무가 부여되고, 낚시업자로 대표되는 유어장 관리주체가 낚시터의 관리권한과 책무가 없다.

## 2. 현 낚시관리의 개선 및 발전모델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바다낚시의 관리체계는 정부가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낚시 허용 및 낚시터 관리 책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어촌계, 수리계에 낚시터 허가를 내어 주거나 대규모 저수지 낚시터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가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경매로 수면관리권을 임대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직접 일반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낚시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낚시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은 현 우리나라 낚시여건으로 볼 때 이중적인 책무를 부담하는 특성이 있어 당장의 도입은 곤란한 상태이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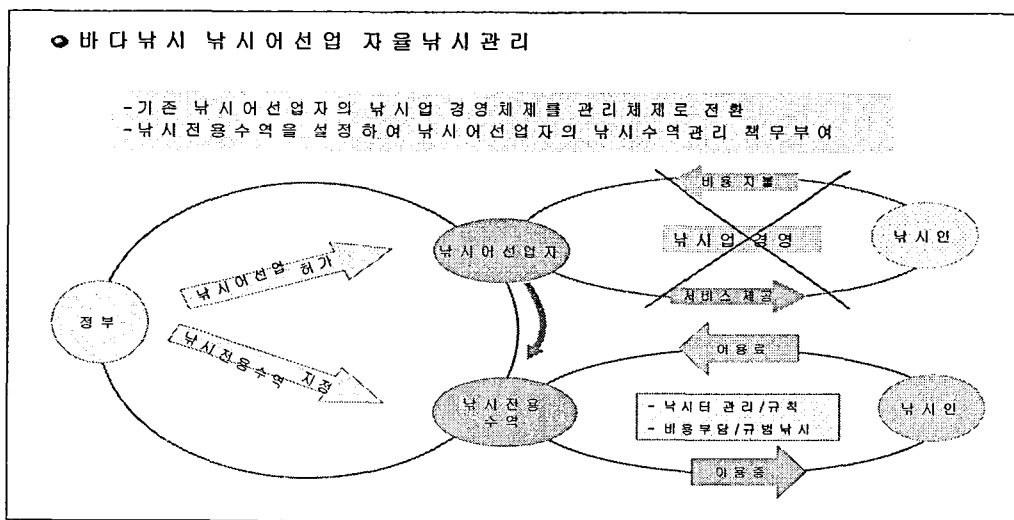
라서 현 상태를 유지·보완할 수 있는 자율낙시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11> 현 낙시관리의 개선 및 자율낙시관리

현재의 우리나라 낙시관리의 개선과 발전모델은 자율낙시관리를 기본으로 하여 현 상태의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라 볼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자율낙시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에 자율관리 규정을 승인과 더불어 자율관리권을 부여하게 되고 이때 자율관리주체가 되는 단체는 자율관리규정을 준비 및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자율관리주체는 낙시인들로부터 낙시이용료를 받게 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낙시인은 낙시규정을 준수하면서 낙시증을 교부받게 되는 것이 자율관리제 운영의 기본체제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민물낙시의 자율낙시관리제도도 정부가 자율관리의 주체가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회원제와 같은 자율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적당한 주체에 낙시운영권을 부여하고 자율관리주체는 일반 낙시인들로부터 낙시이용료를 받게 되고 낙시증을 부여함과 동시에 낙시터의 관리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림 12> 바다낙시 낙시어선업 자율낙시관리

그리고 바다낙시 자율낙시관리제도도 마찬가지로 자율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곳에 마을어

업면허 또는 협동양식장면허를 부여하게 되고 이때 자율관리주체는 일반낙시인들로부터 낙시 이용료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낙시터 관리 및 이용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바다낙시의 낙시어선업의 경우는 낙시어선업자에게 낙시어선업을 허가함과 동시에 낙시 전용수역을 지정해 주고 기존의 낙시어선업자의 낙시업 경영체제를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낙시 전용수역안에 관리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다낙시 낙시어선업 자율낙시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낙시전용수역을 관리하는 낙시어선업자는 일반낙시인들을 대상으로 낙시이용료를 받게 되고 해당 낙시전용수역내의 낙시터 관리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VI.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낙시관리체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부서에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고, 어업인, 낙시어선업자, 낙시인, 환경단체, 유료낙시터업자, 인근주민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낙시인, 낙시어선업자, 환경단체, 어업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 및 단체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어낙시관리·지원·육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낙시행위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환경단체의 감시활동과 더불어 낙시인과의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시진흥 발전을 위한 개선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양어장 낙시터의 제도적 퇴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양어장 낙시터는 전국에 500여군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불법양어장 낙시터는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의 유료낙시터로 허가나지 않는 곳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유료낙시터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

- ◆ 불법양어장 낙시터의 제도적 퇴치
- ◆ 중국산 붕어 수입 대체를 위한 토종붕어 증식을 위한 정부 지원
- ◆ 횃집 수족관의 체장제한 미만 소형어에 대한 철저한 단속
- ◆ 낙시중앙회, 낙시진흥회의 어자원증식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공조적 협력체계구축
- ◆ 불법신고에 대한 업계와 정부간 협조 및 적극적 대응력 구축
- ◆ 환경친화적 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홍보
- ◆ 정부내 낙시전담부서의 설립으로 낙시진흥 및 각종 대회 지원

<표 9> 낙시진흥 발전을 위한 개선책

둘째, 우리나라의 내수면 민물낙시의 주 대상어종은 붕어로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낙시를 위한 붕어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물낙시를 즐기는 대부분의 낙시인들은 토종붕어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중국산 붕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토종붕어의 증식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횃집 수족관의 체장제한 미만의 소형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및 불법

낙시에 대해서 낙시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대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낙시관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자원 증식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등에 정부와 업계의 공조적 협력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자원이 증식이 필요한 지역이나 환경에 특히 민감한 지역에 과학적인 조사를 구축한다면 그 효율성을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넷째, 환경친화적 조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질환경오염에 상당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납붕돌과 각종 유해 떡밥 및 미끼를 사용하는 것을 오염물질 농도 제한과 낙시용 추의 재질개선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낙시의 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건전한 낙시레저 문화로 육성하고 낙시제도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낙시와 관련한 자원·환경·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낙시업무의 집중관리를 통해 책임있는 레저낙시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